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무집행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삼단봉 등 무기를 사용하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단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입국공무원들 역시 공무집행 중 확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2005년 9월 25일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는 피보호자의 인권을 존중과 차별금지의 조항이 신설되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10대인권준수사항'도 제정하였다.

국제 인권 규범, 원칙, 기준들은 아무도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이주자들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국인의 체포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국인 차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자유권규약 제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의 위반 사항이 될 것이다.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은 법규에 의거하여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 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에 앞서 인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단속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법무부 출입국은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시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과 폭행이 금지하게 되어 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범위 반 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집단폭행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들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인권침해 일삼은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한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위 내용이 지켜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의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7년 6월 29일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